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6년 3월호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나.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나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
- 다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투자계약증권 관련 규정 개정 및 장외거래의 다수 당사자 간 거래 허용)
- 나.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2026/2/3 개정·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장외거래의 다수 당사자 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사(투자매매·중개업자)를 통한 유통 금지 조항 삭제(제4조 제1항 단서)
 - 최근 온라인·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
 -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
-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다수 당사자 간 거래 허용(제166조)
 -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 할 필요성에 의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50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

나.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2026/2/3 개정 · 2026/2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적절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(Security Token)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·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‘분산원장’, ‘분산원장등록주식등’ 및 ‘발행인계좌관리기관’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(제2조 제3호의2,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)
 - ‘분산원장’이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,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- ‘분산원장등록주식등’이란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
 - 연계장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에 대한 정보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- ‘발행인계좌관리기관’이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
- 자기자본, 인력·물적 설비,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위원회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제19조 제6호의2,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)
 -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
 -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 -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 -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
 -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
 -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

□ 등록의 직권취소(제19조의5 신설)

-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

□ 분산원장등의 이용 등(제23조의2 신설)

-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,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(제1항 및 제2항)
-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,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(제4항 및 제5항)
-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(제6항)

□ 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(제23조의3 신설)

-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,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

□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자원(제42조의2 신설)

-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2026/2/1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☐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☐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(제72조의2)

—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 추가)
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코스피200옵션 종목코드 설정규칙 개선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6/2/25 개정 ·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를 추가하고,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- ‘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’, 금융위원회(2025.11.17.)

2) 주요 내용

-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 추가(별표 2)
- 분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0.5점 감경
- 정관상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경과 후 정기주총 개최 근거
 - 상장협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정기 주총 분산 개최
 - 최근 정기주총시 전자투표
- 기타 정비사항(제12조 제3항 등)
- 효율적 상장공시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시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개선
-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일 것 등
- 원활한 영문공시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국문공시 영문 번역 업무 등에 대한 거래소 지원 근거 명시 등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제18조의4 제5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

3) 관련 규정 개정

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6/2/27 개정 · 2026/3/1 시행)

— 별표 1

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6/2/26 개정 · 2026/3/1 시행)

— 별표 1

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2/9 개정 · 2026/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☐ 코스피200옵션의 종목코드 설정규칙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☐ 코스피200옵션 종목코드 설정규칙 개선(별표 6)

— 기존 코스피200옵션의 행사가격 코드 규칙(3자리)은 코스피200지수가 1,000p(4자리) 이상 상승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

— 행사가격이 3자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행사가격 코드 규칙을 신설

- 행사가격의 정수를 그대로 부여하므로 행사가격이 4자리가 된 경우 적용 불가
- A01부터 Z99까지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3자리 코드를 부여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적격 집합투자증권 표시 체계 개선)
- 나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이의신청 처리일에 대한 구조적 한계 개선)
- 다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풋백옵션 표준 안내방법 제시 등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2/26 개정 · 2026/4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퇴직연금 가입자가 펀드 명칭을 통해서 퇴직연금 전액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(TDF)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지(‘적격’ 표기)할 수 있도록 표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
 -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(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)
 - 주식 투자 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인 경우 (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)
 - Target Dated Fund : 자산배분형 펀드로서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운용되는 펀드

2) 주요 내용

- 적격 TDF의 펀드 명칭에 ‘적격’ 문구 표시
 - 적격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TDF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‘적격’을 의무 표시

나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2026/2/12 개정 · 2026/2/1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율규제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처리일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이의신청 처리일의 연장(제22조)

- (기존) 자율규제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·의결
 -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(개정) 60일로 연장
 - 기존 30일의 처리기간은 사실관계 재확인과 사안의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아, 매번 기한 연장이 불가피함
 - 충분한 검토 기간을 통해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지원하고 불가피한 반복적 기한 연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

다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2026/2/12 개정 · 2026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‘코스닥 시장 신뢰+혁신 제고 방안’(2025.12.22) 중 IPO 풋백옵션 활용도 제고에 따라 풋백옵션(환매청구권)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방법을 제시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일반청약자에 대한 안내

- 인수회사(주관회사 포함. 이하 동일)는 일반청약자 개인별로 풋백옵션 안내를 수령할 전자매체(문자메시지, 이메일, 모바일 메신저 등)를 사전에 지정
 - 일반청약자의 IPO 공모주 청약시 지정하거나 다른 안내 관련하여 전자매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
- 공모주 입고일부터 풋백옵션 만기일까지 일련의 상황별로 일반청약자에게 해당 매체로 풋백옵션에 대해 안내

□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풋백옵션 상실 주문등 진행

- ① (원칙) 투자자가 “풋백옵션 상실 주문등”을 제출하는 경우, 인수회사는 HTS, MTS 팝업 등으로 풋백옵션 상실을 경고하고 투자자가 옵션 상실에 동의하는 경우 주문등을 진행
 - ‘풋백옵션 상실 주문등’은 풋백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 또는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(타 계좌로의 대체출고 포함)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
- ② (투자자 의사 확인) ①에 따른 투자자 의사를 1회 이상 확인한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, 인수회사는 일정기간(예: 1개월) ①을 생략하고 주문등을 진행할 수 있음

- ③ (상장일 특례) 일반청약자가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하는 경우, 상장일에는 ①을 생략하고 주문등을 진행할 수 있음
- 주가변동성이 큰 상장일의 경우, ①에 따라 주문등이 지체되면 오히려 일반청약자에게 불이익, 불만이 커질 수 있음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